

## 2014년 중국식품안전법

###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안전법을 지키고 국민의 신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규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아래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본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생산과 가공 (이하 식품생산이라 칭함) , 식품유통과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 칭함) ;

(2) 식품첨가제의 생산 경영 ;

(3)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와 식품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 공구, 설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이라 칭함) 의 생산경영 ;

(4) 식품생산 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 ;

(5) 식품,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업생산을 원천으로 하는 농업 기초단계 제품 (이하 식용농산품이라 칭함) 의 품질안전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품질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식용농산품의 품질안전 관리 표준, 식용농산품 안전 관련 정보의 반포등은 반드시 본 법규의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3조 식품안전 작업은 예방 위주, 리스크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 공동 치유등을 실행하며 엄격한 감독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국민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사회 감독을 받고 사회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책임1인자로서 생산경영 활동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으며 생산 경영하는 식품에 대하여 안전 책임을 지며 자신이 생산 경영한 식품에 의해 발생한 인명사고, 재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에 끼친 막대한 악영향에 대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국무원에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직능에 대해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국무원식약품감독관리부문은 본 법규와 국무원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하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 본 법규와 국무원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리스크 감축과 리스크 평가를 조직, 실행하며 식품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 반포한다.

국무원기타관련부문은 본 법규와 국무원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부담한다.

제6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및 식품안전 돌발사건의 대응 작업을 통일 책임, 지도, 조직, 협력해야 하며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관리의 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 본 법과 국무원 규정에 따라 본 급 식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직책을 확정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각자 책임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현급인민정부식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향진 또는 특정 구역에 식약품감독관리 파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 책임제를 실행해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 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 업무에 대하여 평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 본 급 식약품감독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에 대하여 평가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8조 현급이상인민정부는 반드시 식품안전업무를 본 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인입시켜 식품안전업무비용을 본 급 정부 재정 예산에 넣어야 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 기능 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작업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이상인민정부는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정보등 자원을 통합하여 자원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9조 현급이상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은 반드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 분공에 따라 법을 기준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해당되는 식품안전감독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0조 식품업협회는 반드시 업계 자율을 고수하고 식품생산경영자로 하여금 법에 따라 생산경영을 진행하고 업계 성실신용을 수립하고 식품안전 지식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제11조 현급이상인민정부는 반드시 식품안전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단체, 국민성 자치 단체를 통하여 식품안전법,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과 지식의 보급을 이끌어야 하며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고 소비자 식품안전 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신문 매체는 식품안전법,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과 지식의 공익 홍보활동을 조직하여 본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 관련 홍보는 반드시 객관성, 진실성,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진행을 지원해야 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선진 기술과 관리규범을 도입하는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3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식품 생산경영 중 본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문에 식품안전 정보를 문의할 권리가 있으며 식품안전감독관리 작업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식품안전 리스크 검사와 평가

제14조 국가에서는 식품안전 위험검사제도를 제정하여 식품원천성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중의 유해 요소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과 협동하여 식품안전 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과 수정, 식품안전감독관리등 업무의 수요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 리스크 검사 계획을 제정, 실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동 급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관리 등 다른 부문과 협동하여 국가 안전리스크 검사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리스크검사 계획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식품안전리스크 검사방안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서류 보관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에서는 안전 리스크 정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동시에 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동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국가식품안전 리스크 계획을 즉시 조정해야 한다.

의료기구에서 통보한 식품원천성 질병, 식품중독 등 질병정보에 대해서는 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서 국무원 관련부문과 협동하여 분석연구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식품안전 위험검사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 식품안전 위험검사계획이 조정되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보 위행정부문은 반드시 관련 부문과 협동하여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검사방안에 대하여 대응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 위험검사업무를 책임진 기술 기구는 식품안전 리스크 검사 계획과 검사 방안에 따라 검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고 식품안전 위험검사 계획과 방안의 요구에 따라 검사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 리스크 검사 업무는 반드시 국무원위생행정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협동 제정한 업무 규범을 지켜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검사 작업 인원은 관련 식용 농산품 약식기지, 식품생산 경영장소에 들어가 샘플 채집과 관련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채집된 샘플은 시장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7조 식품안전 위험검사 분석 결과 식품안전 위험이 존재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즉시 동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문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동 급 인민정부와 상 급 인민정부 위생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문은 반드시 리스크 검사에서 발견된 식품안전 위험물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8조 국가에서는 식품안전 위험평가제도를 제정하여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중 생물성, 화학성화 물리성 위험 요소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식품안전 위험평가 작업을 주도하여 의학, 농업, 식품, 영양학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 위험평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농약, 비료, 가축약, 사료와 사료첨가제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반드시 식품안전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참가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평가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식품안전 위험검사 정보, 과학적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따라 진행한다.

식품안전 위험평가는 업체를 통한 비용 수급은 불가능하며, 샘플 채집시 시장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9조 아래 임의의 상황에 부합 될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 식품안전 위험검사 또는 검거에 의해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2)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제정과 수정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경우

(3) 감독 관리의 중점 영역이나 중점 품종을 확정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경우

(4) 새로운 식품안전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

(5) 임의의 1개 요소가 식품안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20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 감독, 농업행정 등 각부문은 감독 관리 작업 중 식품안전 위험평가가 필요한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식품안전 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아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위험의 발생 원인과 특성

(2) 관련 검역 데이터와 결론

(3) 위험 범위

(4) 기타 관련 정보와 자료.

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법안의 규정에 따라 즉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해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관련 부문에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제21조 성 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 농업행정부문은 반드시 식품안전 위험검사와 식용 농산품 품질안전위험검사의 관련 정보를 즉시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위생행정, 농업행정부문은 반드시 제때에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와 식용 농산품 품질안전위험평가 결과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로 통보해야 한다.

식용 농산품 품질안전 위험검사와 식용 농산품 품질안전 위험평가는 농업행정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농산품품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22조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는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과 수정 그리고 식품 안전 실행 감독관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이다.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이 불안전 결론으로 확정될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 감독등 부문에서는 반드시 각 자 직책에 따라 즉시 대응 조치를 실행하여 해당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을 정지시키고 소비자에게 식용 또는 사용 금지를 통보해야 하고 식품안전표준을 제정 또는 수정해야 하는것에 대해서 국무원위생행정부문는 즉시 제정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는 반드시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동하여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 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 따라 식품안전 상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 분석을 통해 안전위험 정도가 높이 평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즉시 식품안전위험경고를 제시하고 동시에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24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 식품안전 위험평가기구에서는 반드시 과학적, 객관적, 즉시적, 공개적 원칙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 업계협회, 기술기구, 소비자협회 및 신문매체등을 조직하여 식품안전 위험평가 정보와 식품 안전감독관리 정보에 대하여 교류 소통 해야 한다.

###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25조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은 반드시 국민의 신체건강의 보장을 주요 취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 집행의 표준으로 식품안전표준이외 기타 식품강제성 표준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제27조 식품안전표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1) 식품·식품관련제품중의 질병유발성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약품, 중금속, 오염물질및기타신체건강을위해하는물질의 제한량에대한규정
- (2) 식품첨가제의 품종·사용범위·용량

(3)전문적으로영유아와기타특정대상에적용되는주·부식품의 영양성분요구

(4)식품안전·영양과관련된라벨·표지·설명서에대한요구

(5)식품생산경영과정의위생요구

(6)식품안전과관련된품질요구

(7)식품검사방법과규정

(8)기타식품안전표준으로제정이필요한내용

제28조식품안전국가표준은국무원위생행정부서가제정·공포하며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서가국가표준번호를제공한다.

식품중잔류농약, 잔류동물성약품의제한량규정및그검사방법과 규정은국무원위생행  
정부서·국무원농업행정부서가제정한다.

가축·가금류의도축에관한검사규정은국무원유관주관부서가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협  
동하여제정한다.

관련제품의국가표준이식품안전국가표준규정의내용과관련되는경우반드시식품안전  
국가표준과상호일치해야한다.

제29조국무원위생행정부서는반드시현행의식용농산품품질안전표준·식품위생표준·식  
품품질표준과관련식품의업계표준중강제집행의표준에대하여정비하고식품안전국가  
표준을통일적으로공포해야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은 반드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본 법안이규정하는식품안전국가표준이공포되기 전까지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현행식용농산품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관련식품의업계표준  
에따라식품을생산경영해야한다.

제30조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은반드시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식용 농산  
품 품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국제표준과 국제 식품안전위  
험 평가 결과를 참조로 식품 생산경영자, 소비자와 관련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을 사회에 공포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농업·식품·영양 등 분야의 전문가 및 국무원 유관부서의 대표로 구성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 실용성 등에 대해 심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지역표준을 제정·반포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본 지역표준은 바로 해지해야 한다. 식품안전 지역표준의 제정에 있어 반드시 본 법안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참조·집행해야 하며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이미 등록된 식품안전지역표준에 대하여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32조 국가에서는 식품 생산기업들이 식품안전국가표준 또는 지역표준 보다 더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기업표준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등록하여 본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이미 등록한 기업표준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33조 식품안전표준은 대중에게 무료 검색·조회와 다운로드를 제공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반드시 자신들의 공식사이트에 제정된 식품안전표준을 공포해야 한다.

식품안전표준 집행과정 중 문제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제때에 지도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34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 부문과 협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지역표준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각각 추적·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표준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성 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 감독관리,품질 감독,농업행정 등 부문에서는 식품안전표준 집행 과정중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수집, 정리해야 하고 동시에 동 급 위생행정 부문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협회에서 식품안전표준이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는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위생 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35조 식품생산경영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돼야 하고, 동시에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생산 또는 경영하는 식품 품종, 수량에 부합되는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 가공, 포장,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는 환경이 정결하고 유독,유해 장소 및 오염원과 규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생산 또는 경영하는 식품 품종, 수량에 부합되는 생산경영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독, 갱의, 세수, 채광, 조명, 통풍, 방부, 방파리, 방귀, 방충, 세척 및 폐수 처리, 쓰레기와 폐기물 적치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직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 전문 기술 인원, 관리 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장제도가 있어야 한다.

(4) 합리한 설비 배포도와 공정도가 있어야 하고 가공 대기 식품과 신선식품, 그리고 원재료와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고 식품과 유독물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5) 식기,컵류와 선식 식품 용기는 사용전 세척, 소독을 해야 하고 취사 도구와 용구는 사용 후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의 저장, 운수, 하역 용 용기, 도구와 설비는 안전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안전에 적정한 온도 등 특수한 요구에 부합돼야 하며 식품과 유독, 유해 물품을 동시에 운반해서는 안된다.

(7) 신선식품은 무독 청결한 포장재료와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8) 식품생산경영인원은 개인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식품을 생산 경영할 경우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작업복과 모자는 청결해야 하며 포장에 없는 벌크식 신선식품을 판매 할 경우 반드시 무독의 청결한 판매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9) 용수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하는 생활음용수위 생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한 세척제·소독제는 반드시 인체에 안전·무해해야 한다.

(11)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요구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산경영 규모, 기술 조건 등 요인에 따라 대응되는 식품생산경영 관리 범위를 제정해야 한다.

제36조 아래 식품의 생산 및 경영은 금지해야 한다.

(1) 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 건강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한 식품 또는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2) 질병유발성 미생물·잔류농약·잔류동물약품·중금속·오염물질과 기타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의 함유량이 식품안전표준 제한량을 초과하는 식품

(3) 식품첨가제의 범위와 사용량을 규정 이상으로 사용한 식품

(4)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문적으로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제공되는 주·부 식품

(5) 부패변질, 유지변질 또는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겼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기타 감관성장의 이상이 있는 식품

(6) 병사·독사 또는 불명의 가금·가축·동물·수산물 등 및 그 제품

(7) 동물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 제품

(8) 포장재료·용기·운송도구 등이 오염된 식품

(9) 생산일자를 허위로 표기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10) 라벨이 없는 예비 포장 식품

(11) 국가가 질병 예방 등 특수한 필요를 위하여 생산 경영을 금지한 식품

(12) 기타 식품 안전 표준 또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제37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하여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식품 유통·요식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허가증에는 생산 경영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농민은 개인적으로 자체 생산한 식용 농산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식품 생산자와 식품 노점상이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 법안이 규정한 대응되는 생산 경영 규모 식품 안전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생산 경영한 식품의 위생을 보장해야 하면 인체에 무해해야 한다. 식품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은 이에 대해 감독 관리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본 법안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반드시 소규모 식품 생산자, 식품 노점상 등에 대하여 통합 관리, 서비스와 통일 계획을 하여 그들의 생산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경영 조건 개선을 부추기고 지원하며 집중 거래 시장, 점포 등 고정된 경영 장소에 입주하도록 한다.

제3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식품 약품 감독 관리 부문은 반드시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본 법안 제35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 시 신청인의 생산 경영 장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허가를 결정한다. 허가되지 않은 경우, 동시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9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반드시 건전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직원 식품 안전 지식 교육을 강화하며 전문 직 또는 겸직의 식품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생산 경영한 식품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업체는 식품 안전 관리 인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본인 관리 범위 내 식품 안전 법률 법규,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안전 전문 지식을 확실히 숙지하도록

하여 그에 상응되는 식품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식품생산 경영업체는 식품안전 관리 인원이근무를 시작하기 전, 먼저 자격 시험을 진행하여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 업체에재직하는 식품안전 관리 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추첨으로 자격 시험을 할수 있고 시험 결과를 공포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업체 식품안전 관리 인원 교육 지도서와 시험 검사 방법을 제공 공포하고 기업과 국민은 무료로 조회 열람할 수 있다. 감독 추첨 시험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40조 국가는식품의생산경영기업이양호한생산규범의요구에부합하도록장려하고위해의분석과핵심통제체계를실시하고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도록장려한다.

양호한생산규범·위해분석·핵심통제체계인증을통과한식품생산경영기업에대하여인증 기구는반드시법에의거하여추적조사를실시해야한다. 인증요구에더이상부합하지아니하는기업에대하여반드시법에따라인증을취소하며즉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하고사회에공포해야한다. 인증기구의추적조사실시는비용을수취해서는 안된다.

제41조 식품 생산 업체는 원재료 검사, 생산 과정 안전관리, 저장관리, 설비 관리, 불합격품관리등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제정하고실행해야 하며 식품안전 보장체제를 지속 보완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생산 업체는 반드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어 요구를 제정 실행하여 생산한 제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1) 원재료 구매, 원재료 검사, 원료 투입 등 원재료의 공제
- (2) 생산 절차, 설비, 저장, 포장등 생산 중점 환절에 대한 공제
- (3) 원재료 검사, 반제품 검사, 완제품 검사 등 검사 공제
- (4) 운송, 납품 공제

제42조 영유아와 기타 특정 부류 사람들에 전문 식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는 양호한 생산규범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에 적합한 생산 품질관리 체제를 구

축하여 해당 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생산품질관리 체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사 인원 건강 관리 제도를 제정 실행해야 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서 규정한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신선식품을 직접 접촉할 수있는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식품생산경영인원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 증명을 취득한 후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44조 식용농산품생산자는반드시식품안전표준과국가유관규정에의거하여농약·비료·동물약품·사료·사료첨가제등농업투입품을사용해야한다. 식용농산품의생산기업과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은반드시식용농산품생산기록제도를구축해야한다.

현급이상농업 행정부서는반드시농업투입품사용에대한관리와지도를강화하고건전한 농업투입품인전사용제도를구축해야한다.

제45조 국가에서는 식품 전과정 추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국무원 농업행정등 관련 부문과 함께식품과 식용농산품 전 과정 추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 업체는 본 법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추적 체제를 구축하여 식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 업체에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추적체제를 구축하는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6조 식품생산자는식품원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구매할시반드시 공급자의허가증과제품합격증명서류를확인해야한다. 합격증명서류를제공할수 없는식품원료에대해서는반드시식품안전표준에따라검사를실시해야하고,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원재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은구매하거나사용해서는안된다.

식품생산 업체는반드시식품원재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접수검사 기록제도를제정하여식품원재료·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명칭,규격,수량, 생산일자 또는 생산일련 번호, 유효기간, 납품시간 및 공급자명칭,주소, 연락처등내용을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 기록과 증빙 서류 보관기간은

최저 제품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이며 명확한 유효기간이 없는 제품의 기록과 증빙 서류는 최소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7조 식품생산 업체는반드시식품출고검사기록제도를구축하여출고식품의검사합격증과안전상황을조사하고식품의명칭,규격,수량,생산일자 또는 생산 일련번호, 유효기간, 검사합격증번호, 판매 일자 및 구매자명칭, 주소, 연락처등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해야한다. 기록과 증빙 서류 보관기간은 최저 제품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이며 명확한 유효기간이 없는 제품의 기록과 증빙 서류는 최소 2년 보관해야 한다.

제48조 식품·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의 생산자는 반드시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대하여검사하고검사합격한후출고 또는판매해야 한다.

제49조 식품경영자는 식품 구매 시 반드시 공급업자의 허가증과 식품 합격서류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

식품 경영 업체는반드시식품 납품검사기록제도를구축하여납품 식품의명칭,규격,수량, 생산일자 또는 생산 일련번호, 유효기간, 납품 일자 및 공급업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등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 기록과 증빙 서류 보관기간은 최소 제품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이며 명확한 유효기간이 없는 제품의 기록과 증빙 서류는 최저 2년 보관해야 한다.

통일적인배송경영방식을적용하는식품경영 업체는기업본부에서공급업체의허가증과식품합격증명서류에 대해여일괄적으로 검사및 확인을 진행하며식품 접수 검사 기록을 해야 한다.

제50조 식품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식품을 판매할 경우, 도매 식품의 명칭,규격,수량, 생산일자 또는 생산 일련번호, 유효기간, 판매 일자 및 구매자 명칭, 주소, 연락처등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 기록과 증빙 서류 보관기간은 최소 제품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이며 명확한 유효기간이 없는 제품의 기록과 증빙 서류는 최저 2년 보관해야 한다.

제51조 식품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안전의 저장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창고 저장 식품을 검사해야 하며 변질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52조 식품 생산자가 벌크 식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저장 위치에 식품의 명칭, 생산 일자 또는 생산 일련번호, 유효기간, 생산자 명칭 및 연락처 등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식품 생산자가 벌크 식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벌크 식품의 용기, 외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 일자 또는 생산 일련번호, 유효기간, 생산자 명칭 및 연락처 등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제53조 예비포장 식품의 포장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명칭, 규격, 내용량, 생산일자
- (2) 성분 또는 배료표
- (3)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 (4) 유효기간
- (5) 제품 표준 코드
- (6) 저장 조건
- (7) 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에서의 통용명칭
- (8) 생산허가 번호
- (9)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생산 일자, 유효기간 등 사항은 반드시 라벨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명시해야 한다. 영유아와 기타 특수대상에 제공되는 전문주·부식품은 그 라벨에 또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식품 품목 라벨 주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 특수 규정하는 식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4조 음식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원재료 구매 공제 요구를 제정 실시해야 하고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원재료를 구매해서는 안된다.

음식서비스 제공자는 제조 가공 과정 중 가공 대기 식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하며 부패 변질 또는 기타 이상이 있는 식품은 가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5조 음식서비스 제공 업체는 식품 가공, 저장, 진열등 시설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 해야 하며 보온 시설 및 냉장,냉동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세척, 교정을 실시 해야 한다.

음식서비스 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식기,컵류에 대하여 세척 소독을 해야 한다. 세척과 소독을 하지 않은 식기,컵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음식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컵류를 위탁 세척 소독을 할 경우, 본 법안 규범에 부합되는 식기, 컵류 전문 소독 서비스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제56조 국가는식품첨가제의생산에대하여허가제도를실시한다. 식품첨가제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생산하려는 식품첨가제에 부합되는 생산 장소, 생산 설비, 전문 기술인원과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고 본 법안 제38조 규정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경영자가 식품첨가제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제품 합격서류를 검사하여 판매 식품첨가제가 합법적인 식품첨가제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확보해야 하고 식품첨가제의 명칭,규격,수량, 생산일자 또는 생산 일련번호, 유효기간, 납품 일자 및 공급업자 명칭, 주소, 연락처등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 기록과 증빙 서류 보관기간은 최소 제품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이며 명확한 유효기간이 없는 제품의 기록과 증빙 서류는 최소2년 보관해야 한다.

제57조 새로운식품원료를이용하여식품의생산에종사하려 하거나식품첨가제 신 품종, 식품관련제품신품종의생산경영활동에종사하려고 신청하는 업체또는개인은

반드시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관한제품의안전성평가자료를제출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반드시신청접수당일부터 60일이내에관련제품의안전성평가자료에대하여심사를진행해야한다. 식품안전요구에부합될경우법에의거하여허가를결정하고이를공포한다. 아닐 경우허가가 불가능하며 동시에서면으로이유를설명한다.

제58조 식품첨가제는반드시기술상 꼭필요해야하며위험평가를거쳐안전성이 확인돼야 사용허용범위에포함시킬수있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반드시기술적필요성과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따라식품첨가제의종류, 사용범위, 용량표준에대하여제때에 개정을실시해야 한다.

제59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표준 중 식품첨가제의품종, 사용범위, 용량의규정에따라식품첨가제를사용해야하고식품 생산중식품첨가제이외의화학물질과기타인체건강을유해한 물질 사용해서는안된다.

제60조 식품첨가제는반드시라벨, 설명서와 포장에있어야한다. 라벨, 설명서에는반드시본 법안제53조제1항제1항 (1)~(6), (8), (9)에서규정하는사항및식품첨가제의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명기해야 하고 라벨에“식품첨가제”라는문자를명기해야한다.

제61조 식품과식품첨가제의라벨, 설명서는허위나 과장된내용을포함해서는안되며질병예방, 치료기능등과관련되어서는안된다. 생산자는라벨, 설명서상에명시한내용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

식품과식품첨가제의라벨, 설명서는반드시깨끗하고 선명해야하며식별이용이해야한다.

식품과식품첨가제가라벨, 설명서상명기한내용과부합하지않을경우시장에 판매되어서는안된다.

제62조 식품관련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돼야하고 관련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국가 관련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품질 감독부문은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활동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63조 식품경영자는반드시식품 라벨에표시한경고 표시, 경고설명또는주의사항의요구에따라예비포장식품을판매해야한다.

제64조 생산경영하는식품에는약품을첨가하여서는안되나전통적으로는식품이면서또약재로 쓰이는물질은첨가할수있다. 전통적으로는식품이면서또약재인물질의 목록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서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65조 국가에서는특정적인보건 효능을구비한식품(이하 “보건 식품”이라 칭함)에대하여엄격한감독관리를실시해야 한다. 보건 식품은 인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위해가 없어야 하며해당라벨, 설명서에는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언급해서는안되며내용은반드시사실에 부합돼야 하며반드시적합한대상부적합한대상, 효능성분 또는대표적성분및그함량등을명기해야한다. 제품의효능과성분은반드시 라벨, 설명서상과일치해야한다. 처음 수입하는 보건 식품은 수출국(지역) 주관 부처에서 시장판매를 인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보건 식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는 반드시 인체에 안전 무해해야 한다. 보건 식품이 말하는 보건 기능은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건 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식품 생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의 목록(이하 “보건 식품에 적용되는 원료 목록”이라 칭함)과 보건 식품에서 보건 효능을 제시할 수 있는 물질의 목록은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국무원위생행정부문, 국가 중의약 관리부문과 협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66조 새 원재료를 처음 사용하는 보건 식품과 처음 수입되는 보건 식품은 반드시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완제품 및 그 원재료의 안전성과 보건 기능을 국가 표준, 규범등 통용 요구에 따라 평가 받을 수 있는 첫 수입 보건 식품의 경우 반드시 서류 등록 관리를 해야 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및 조정하고 반포해야 한다. 기타 보건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서류 등록과 관리를 실행한다.

보건식품등록. 신청자는 보건식품의 연구보고서, 제품의 배합방법, 생산공법, 안전성 및 보건기능평가, 라벨, 설명서등 자료와 견본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기술평가를 진행하여 안전과

기능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락하고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등록을 불허하며 서면으로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등록허가를 결정한 새 원재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에 대해서는 새 원재료를 사용가능 보건식품 원재료 목록에 즉시 포함시킨다.

보건식품 서류등록. 서류 등록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에 제품의 배합방법, 생산공법, 라벨, 설명서 및 제품의 안전성과 보건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식품 등록자, 서류 등록자는 그가 제출하는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은 등록 또는 서류등록을 마친 보건식품 목록을 즉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67조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양호한 생산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할 보건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증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생산품질관리체계의 운영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기검사를 진행하고 소재지 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에 자기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의 심사를 통과한 등록재료 또는 제출한 등록서류에 명기(이하 등록 또는 서류등록을 마친이라 칭함)한 제품의 배합방법, 생산공법 등 기술 요구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고 등록 또는 서류등록을 마친 제품의 배합방법, 생산공법등 기술 요구를 기업표준으로 제정하여 소재지 성급.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에 서류등록을 해야 한다.

제68조 보건식품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에서 제정한다.

제69조 영유아용식품에 대하여 국가는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행한다.

영유아용 식품의 생산업체는 본 법규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재료의 공장 진입으로부터 완제품 출하의 전반 과정에 대해 품

질제어를 실행하며 출하하는 영유아용식품에 대하여 각과정별로 모두 검사를 진행하여 영유아용 식품의 식품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영유아용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신선한 생우유, 보조재, 식품첨가제 등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영유아용식품 생산은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증해야 한다.

영유아용식품 생산업체는 생산 원재료, 제품의 배합방법 및 라벨 등을 성.자 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서류를 등록 해야 한다.

의뢰, OEM, 분할포장(分装) 방식으로 영유아용분유를 생산해서는 안되며 동일 배합방법으로 부동한 브랜드의 영유아용 분유를 생산해서도 안된다.

제70조 학교, 탁아소.유아원, 건축 공사장등 집중식사업체에 식당이 있을 경우 업체 식당은 본 법규 및 관련 법률법규, 규칙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식품안전표준을 실행하며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탁아소.유아원, 건축 공사장등 집중식사업체가 외부업체로부터 음식을 주문할 경우 식품생산경영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주문을 해야 하고 관련요구에 따라 음식제공업체의 제공식품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한다. 음식제공업체는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의 요구에 따라 식품을 가공하여 식품의 안전 및 영양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학교, 탁아소.유아원, 건축 공사장등 집중식사업체의 주관부문은 단체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지식교육과 일상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위협요소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71조 식기, 컵류의 집중소독 제공업체는 적합한 작업장소, 세척소독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 생산용수는 국가표준과 위생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식기, 컵류의 집중소독 제공업체는 소독하는 식기, 컵류에 대하여 각 과정별로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합격후에야 출하를 시키며 소독합격 증명서류를 동봉한다. 소독후 식기, 컵류의 독립포장상에는 업체 명칭, 주소, 연락처, 소독날자 및 사용기한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72조 집중거래시장의 창설자, 매장 임대자 및 전시회 개최자는 입장식품 경영자의 허가증을 심사하고 입장식품 경영자의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입장식품 경영자의 경영환경과 조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식품 경영자의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제지시키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집중거래시장의 창설자, 매장 임대자 및 전시회 개최자가 전항 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시장에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대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제73조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식품 경영자에 대하여 실명등록을 하고 인터넷식품 경영자의 식품안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증을 심사해야 한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식품 경영자의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시 지체없이 제지시키고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시에는 인터넷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구매시 그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받을 경우 그는 인터넷식품 경영자 또는 식품 생산자에게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식품 경영자의 실명,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배상을 하며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후 인터넷식품 경영자 또는 식품 생산자에게 사후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 더 유리한 약속을 하였을 경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연대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제74조 식품생산 경영자는 식품안전자기검사제도를 수립하여 본 업체 식품안전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생산경영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생산경영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식품생산 경영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품생산 경영활동을 즉시 멈추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75조 국가는 식품회수제도를 수립한다. 식품 생산자는 그가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체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즉시 생산을 멈추고 기출시판매된 식품을 회수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회수 및 통보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 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체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을 발견시 즉시 경영을 중지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를 주며 경영정지 및 통보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가 회수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지체없이 회수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회수한 식품에 대하여 보완, 무해화 처리, 소각 등 조치를 취하여 해당 식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단, 라벨, 표지 또는 설명서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회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 생산자는 보완 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상황하에 계속하여 판매를 할수 있으며 판매시 소비자에게 보완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식품 리콜 및 처리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하고 리콜한 식품에 대해 무해화처리, 소각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시간, 장소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장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식품생산 경영자가 본조 규정에 따라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리콜 또는 경영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6조 식품광고의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거짓, 과대의 내용이 담겨서는 안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을 언급해서도 안된다. 식품생산 경영자는 식품광

고 내용의 사실성, 합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식품 광고는 생산업체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심사, 승인을 득해야 하고 보건식품 광고승인서를 취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기승인한 보건식품 광고목록 및 승인한 광고내용을 공포하고 즉시 업데이트 해야 한다.

광고주, 배포자가 거짓 식품광고를 설계, 제작 및 발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식품생산 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기타 관계부문 및 식품검사기관, 식품업협회, 소비자협회는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안된다.

제77조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시 거짓홍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식품생산 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제78조 국가는 식품안전책임보험제도의 수립을 격려하고 식품생산경영 업체가 식품안전책임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제79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상무 등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식품분야 발전계획 및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여 산업구조 최적화를 추진하며 식품안전에 불리한 생산기술, 공법 및 설비를 도태시키며 식품분야 신뢰성실체계 구축에 대한 지도역할을 강화하며 식품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의 규모화 생산과 체인경영, 운송을 격려한다.

## 제5장 식품검사

제80조 식품검사기관은 국가 관련 인증인가의 규정에 따라 자질을 인증 받은 후에야 식품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률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식품검사기관의 자질인증 조건과 검사규범은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국무원위생행정부문과 함께 규정한다.

본 법규 시행전에 국무원관련 주관부문의 승인을 받아 설립 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검사기관은 본 법규에 의거하여 식품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81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관이 지정한 검사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검사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표준과 검사규범에 의거하여 식품을 검사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윤리를 엄수하며 발급하는 검사 데이터와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보증해야 하며 거짓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제82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관과 검사자 책임제를 실행한다. 식품검사 보고서에는 식품검사기관의 공인을 찍고 검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식품검사기관과 검사자는 발급한 식품검사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검사를 면제해서는 안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불정기적인 추출검사를 진행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추출검사를 진행시 추출견본을 구매하고 검사비 및 기타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업무수행 중에 식품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 본 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84조 본 법규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 검사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론 접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 이내에 공포된 재검사기관 명단 중에서 가까운 곳의 재검사기관을 선택하여 재검사를 진행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할 수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최초 검사기관에 통보하여 보관해둔 견본을 즉시 재검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재검사기관이 발급한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결론이며,재검사기관과 최초 검사기관이 동일 기관이어서는 안된다. 재

검사기관 명단은 국무원인증인가감독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분에서 공동으로 공포한다.

제85조 식품생산경영 업체는 생산하는 식품에 대해 스스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본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식품업협회등 조직, 소비자는 식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식품을 검사해야 하는바 본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제6장 식품 수출입

제86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수출입식품 안전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제87조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수출입 상품 검사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쳐 합격이어야 한다.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제88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첨가제 새 품종, 식품 관련제품 새 품종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수출업자, 경외 식품생산업체 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 신청을 하고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 본 법규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즉시 적합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전항이 규정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을 수입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인가결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89조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수출업자, 경외 식품생산업체는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본 법규 및 중국 기타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하며 식품라벨, 설명서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 해당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상은 경외 수출업자, 경외 식품생산업체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전항이 규정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심사가 불합격일 경우 수입해서는안된다.

제90조 경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이 중국 경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서 중대한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지체없이 리스크조기경보 또는 제어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문에 통보를 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행하고 중대 식품안전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시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 즉시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접수부문은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1조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업체,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 서류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업체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경외 식품생산업체가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외 식품생산업체의 원인으로 인해 관련 수입식품에 중대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사안을 공포해야 한다.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정기적으로 서류등록을 마친 경외 수출업자, 대리업체, 수입상 및 등록을 마친 경외 식품생산업체 명단을 공포해야 한다.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2조 수입하는 예비포장식품, 식품첨가제에는 중문라벨이 있어야 하고 법에 따라 설명서가 필요한 것은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본 법규 및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의 원산지,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예비포장식품에 중문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설명서가 본조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해서는 안된다.

제93조 수입상은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경외 수출업자와 구매자 명칭, 주소, 연락처, 납품일자등 내용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명서류 보존기한은 식품 유통기한 만기후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것은 보존기한이 2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94조 수입식품이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체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수입상은 수입을 즉시 중지하고 본 법규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리콜을 실행해야 한다.

제95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그의 수출식품이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서의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하고 수출하는 식품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서 감독 및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와 수출식품 원재료 재배, 양식장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 서류등록을 해야 한다.

제96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이하 수출입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 및 통합하고 관련부문, 기관 및 업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수출입 식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하면서 발견한 식품안전 정보

(2) 업계협회,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3) 국제조직, 경외 정부기관이 발포한 식품안전 정보, 리스크 조기경보 정보 및 경외 업계협회등 조직,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안전 정보

(4) 기타 식품안전 정보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수출입 식품의 수입상, 수출업자 및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행하고 신용기록을 만들어 공포해야 한다. 불량기록이 있

는 수입상, 수출업자 및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그의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97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하여 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와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적합한 검사검역 요구사항을 확정한다.

##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제98조 국무원은 국가식품안전사고를 응급조치하고 대응책을 제정한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상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의 응급 대응책 및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 대응책을 제정하고 상급 인민정부에 서류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응급 대응책은 식품안전에 대해 등급을 나누고 사고처리조직지휘체계와 직책, 예방조기경보체제, 처리절차, 응급보장조치 등에 대해 규정을 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 업체는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본 기업의 각항의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실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식품안전사고 위협요인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99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사고발생 업체와 환자를 접수하여 치료를 맡은 업체는 즉시 사고발생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행정, 품질감독등 부문은 일상 감독관리 중에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식품안전사고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를 받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응급 대응책의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응급 대응책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은 식품안전사고를 숨기거나, 거짓보고를 하고 보고시간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관련 증거를 은닉, 위조하거나 인멸해서도 안된다.

제100조 의료업체는 그가 접수한 환자가 식품기인성 질병 환자, 식물중독환자 또는 식품기인성 질병환자, 식물중독환자로 의심됨을 발견할 경우 즉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관련 질병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즉시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하고 위생행정부문은 전염병을 조사 처리 또는 기타 돌발 공공위생 사건 중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시 즉시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통보를 해야 한다.

제10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접수후 즉시 동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등 부문과 함께 조사처리를 진행하고 이하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해야 한다.

(1) 응급구원 업무를 전개하고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들을 치료한다.

(2)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그 원재료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즉시 검사한다. 오염되었음을 확정 된 식품 및 그 원재료에 대하여 식품생산 경영자에게 명령을 내려 본 법규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 경영정지 및 소각을 진행하도록 한다.

(3) 오염이 된 식품용 공구 및 용품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세척소독 명령을 내린다.

(4) 정보발포업무를 알맞게 수행하여야하고, 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상황에 대해 발포하며 발생가능한 위해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질병예방제어기관은 사고현장에 대해 위생처리를 하고 식품안전사고 관련 요인에 대해 전염병학 조사를 하며 관련 부서는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질병예방제어기관은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와 위생행정부문에 전염병리학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응급 대응책을 가동해야 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사고 처리지휘기관을 즉시 설립하고 응급 대응책을 가동하며 본조 제1항과 응급 대응책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02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구역(设区)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즉시 관련 부문과 함께 사고 책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의 직책이행을 독촉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사고책임조사 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개 이상 성.자치구.직할시에 포함된 중대 식품안전사고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전항 규정에 따라 사고책임조사를 진행한다.

제103조 식품안전사고 조사는 실사구시, 과학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즉시 정확하게 사고 성질과 원인을 조사해내며 사고책임을 확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조사는 사고업체의 책임을 조사하는 외에 감독관리와 인증직책을 지고있는 감독관리부문, 인증기관 직원의 실직, 독직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제104조 식품안전사고 조사부문은 관련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사고 관련 상황을 요해할 권리가 있고 관련 자료와 견본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업체와 개인은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 업무를 협력해야 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견본을 제출하며 거절해서는 안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은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

## 제8장 감독관리

제10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부문은 식품안전 위험검사, 리스크 평가결과 및 식품안전 상황등에 근거하여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 및 빈도수를 확정하고 리스크 등급별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10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약품감독관리, 농업행정, 품질감독등 부문을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간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연간계획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식품안전 년간감독관리계획은 아래 사항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1) 영유아와 기타 특정 대상에 적용되는 주.부식품등 특수식품

(2) 보건식품 생산과정 중의 첨가행위와 등록 또는 서류등록을 마친 기술요구에 따른 생산상황, 시장에서 판매되는 보건식품의 라벨, 설명서 및 홍보자료 중 기능홍보관련 상황

(3)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식품생산 경영자

(4) 식품안전 위험검사 결과 식품안전 후환 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107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부문은 각자 식품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생산경영 장소에 들어가 현장검사 진행

(2)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대해 추출검사 진행

(3) 관련 계약서, 증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복제

(4)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안전위협요소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식품, 위법으로 사용한 식품 원재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및 위법 생산경영에 사용되거나 오염이 된 공구, 설비를 봉인하고 압류한다.

(5) 위법으로 식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한 장소를 차압봉인한다.

제108조 식품에 안전후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나 식품안전표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식품안전표준을 제정, 수정하기전에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임시 제한량과 임시 검사방법을 규정하여 생산경영과 감독관리의 의거로 해야 한다.

제109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중에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인정한 채속 검사방법으로 식품에 대해 초보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초보적 검사결과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식

품은 본 법규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초보적 검사결과는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조치에 의거되지 않는다.

제110조 현금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감독검사의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감독검사 기록은 감독 검사자와 식품생산 경영자의 서명후 분류보관한다.

제111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 신용당안을 만들고 허가발급, 일상 감독검사결과, 위법행위 조사처분등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식품안전 신용당안 기록서에 근거하여 불량신용 기록이 있는 식품생산 경영자에 대하여 감독검사 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제112조 식품 생산경영 과정에 존재하는 안전위협요소를즉시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생산 경영자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와 책임에 대한 예약상담을 할수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의 체계적인 리스크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관리구역 내의 식품안전 위협요소를 즉시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급 인민정부는 주요 책임자와 책임에 대한 예약상담을 할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가 식품안전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구역적 중대 식품안전위협요소를즉시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주요 책임자와 책임에 대한 예약상담을 할수 있다.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예약상담을 받은 소속 식품생산경영자, 식품감독관리부문,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 및 그 감독관리 업무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

책임에 대한 예약상담 상황과 시정상황은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 신용당안, 지방인민정부 및 부문의 식품안전감독관리 업무평가, 고과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3조 식품안전 위험검사 분석결과, 신고고발등 정보가 식품 생산경영 과정에 중대 위법행위 또는 중대 식품안전 위협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을 표명할 경우, 상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관련된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해 현

장 급습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감독관리 직책을 지닌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제114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은 본 부문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를 공포하여 자문, 신고, 고발을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자문, 신고, 고발 내역이 본 부문 직책에 속할 경우 수리하고 즉시 답복, 검토, 처리를 해야 하며 본 부문 직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처리권리를 가진 부문에 서면통보를 주고 처리하도록 인계해야 한다. 처리권리를 가진 부문은 회피하지 말고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식품안전 사고에 속하는 것은 본 법규 제7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사실임이 확정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장려를 한다.

제115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생산경영자의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벌금의 행정처벌을 행해서는 안된다.

제116조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은 집법자에 대한 식품안전 법률법규, 식품안전표준, 전문지식, 집법능력등 방면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과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식품안전 집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식품생산 경영자, 업계협회 등이 식품안전 집법자가 집법과정에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불공정, 부적절한 집법행위를 발견시 상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에 신고, 고발을 할수 있으며 감찰기관에 신고, 고발할수도 있다. 신고, 고발을 받은 부문 또는 기관은 확인을 하고 확인상황을 식품안전 집법자 소재부문에 통보하며 규율.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17조 국가는 식품안전통계조사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은 국무원 통계주관부문과 함께 식품안전통계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통계조사 업무를 전개하고 식품안전 통계 데이터,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적시성을 보증한다.

제118조 국가는 통일된 식품안전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식품안전정보 통일공포제도를 실행한다. 아래 정보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공포한다.

- (1) 국가 식품안전 전반 상황
- (2) 식품안전 리스크 경고정보
- (3) 중대 식품안전사고 및 관련 조사처리 정보
- (4) 기타 국무원이 확정한 통일적으로 공포해야 할 정보

전항 제2항, 제3항이 규정한 정보의 영향이 특정구역에만 제한되었을 경우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공포할 수도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농업행정, 품질감독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일상 감독관리 정보를 공포한다.

식품안전 정보의 공포는 정확성, 적시성, 객관성을 보증해야 하고 관련 식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해 해석 설명하며 소비자와 사회여론을 오도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문이 공포해야 할 식품안전 정보를 권리 부여가 없이 발포해서는 안된다.

제119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농업행정, 품질감독부문과 함께 식품안전위법행위정보뱅크를 구축하여 식품생산 경영자의 위법행위 정보를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공포하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위법행위 경우가 엄중한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투자주관부문, 증권감독관리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0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농업행정, 품질감독부문은 본 법규 규정의 통일적인 공포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시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하고 상급 주관부문은 즉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농업행정, 품질감독부문은 기획특한 식품안전 정보를 상호 통보해야 한다.

제121조 그 어떠한 업체 및 개인은 거짓 식품안전 정보를 날조, 유포해서는 안된다.

발포한 식품안전 정보가 사회 또는 식품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사전에 먼저 해당 구역(设区)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등 부문의 확인협조를 필요로 할 경우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소비자와 사회여론을 오도배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발견시 즉시 관련 부문, 전문기관, 관련 식품생산경영자 등을 조직하여 확인, 분석을 진행하고 지체없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122조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부문은 식품안전 범죄행위를 발견시 행정집법기관의 범죄안전 이송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안전을 공안기관에 즉시 이송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부문이 이송한 안전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즉시 심사하고 범죄사실이 있고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은 입안하여 수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식품안전 범죄안전 수사 과정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여기거나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 없으나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즉시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부문 및 감찰기관,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에 검사, 감정, 인정 등 협조 요청을 하였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은 즉시 협조하여 관련 검사결론, 감정의견, 인정의견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제9장 법적책임 제1절 생산경영자의 책임

제123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가 없이 식품 생산경영 활동,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본 법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보건식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위법 소득과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 식품첨가제 및 위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공구, 설비, 원재료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 식품첨가제 물품가치가 1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하고 물품가치가 1만원 이상일 경우 물품가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허가가 없이 식품 생산경영 활동,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본 법규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보건식품을 생산경영함을 알면서도 생산경영 장소를 제공한 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위법행위 정지 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제124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허가증을 취소하고 위법 소득,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 및 위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공구, 설비, 원재료등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가치가 1만원 미만일 경우 15만원의 벌금을 행하고 물품가치가 1만원 이상일 경우 물품가치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1) 비 식품 원재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중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신체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거나 회수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할 경우

(2) 생산하는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의 영유아 및 기타 특정 대상에 적용되는 주.부식품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전항 규정의 행위에 종사함을 알면서도 생산장소를 제공하거나 그에게 국가에서 공포한 식품 중에 위법첨가 가능성이 있는 비식용 물질을 판매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법행위 정지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제125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위법 소득,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 식품첨가제 및 위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공구, 설비, 원재료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 식품첨가제 가치가 1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고 물품

가치가 1만원 이상일 경우 물품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1) 질병유발성 미생물, 농약잔류, 가축약 잔류, 중금속, 생물독소, 오염물질 및 기타 신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 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제한량을 초과한 식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2) 경영하는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의 영유아 및 기타 특정 대상에 적용되는 주.부식품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생산경영 중에 범위, 제한량을 초과한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4) 부패변질, 유지가 시큼하게 변했거나, 곰팡이가 끼고 벌레가 생겼거나, 불결하거나, 이물이 혼합되었거나, 가짜를 섞고 혼합시켰거나 시각적으로비정상적인 식품을 생산할 경우

(5) 병사, 독사 또는 사인불명 가금, 가축, 짐승, 수산동물 육류를 경영하거나 병사, 독사 또는 사인불명 가금, 가축, 짐승, 수산동물 육류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6)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 불합격인 육류를 경영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 불합격인 육류제품을 생산할 경우

(7) 생산일자를 거짓으로 명시한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경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할 경우

(8) 국가가 질병예방등 특수 수요에 따라 생산경영 금지 령을 내린 식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9) 보건식품 생산업체가 등록 또는 서류등록을 마친 제품 배합방법, 생산공법등 기술요구에 따라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1) 의뢰, OEM, 분할포장 방식으로 영유아용 분유를 생산하거나 동일 배합방법으로 부동한 브랜드의 영유아용 분유를 생산할 경우

(11) 찬음 서비스 제공자가 본 법규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OEM 식품 및 원료를 검사하지 않거나 부패변질 또는 기타 시각적으로 이상이 있음을 발견 시에도 계속 가공, 사용할 경우

(12) 새 식품 원재료로 식품생산에 종사 또는 식품첨가제 새 품종 생산에 종사하면서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13)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첨가제를 생산경영할 경우

(14)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본 법규 제7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경영 정지 령을 내린후에도 식품생산경영자가 리콜 또는 경영정지를 거절할 경우

식품 관련 제품의 새 품종 생산에 종사하면서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품질감독부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6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법 소득,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 식품첨가제 및 위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공구, 설비, 원료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의 식품, 식품첨가제 가치가 1만원 미만일 경우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고 물품가치가 1만원 이상일 경우 물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령을 내려 생산정지 영업정지 시키고 나아가서 허가증 취소까지 한다.

(1) 포장재료, 용기, 운송공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경영할 경우

(2) 라벨이 없는 예비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생산경영할 경우

(3) 식품 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 사용할 경우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 중에 약품을 첨가할 경우

(5) 영유아 및 기타 특정 대상에 적용되는 주.부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보건식품 생산업체가 본 법규 규정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효

과적인 운영을 유지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자기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식품생산업체가 본 법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과정제어 요구사항을 제정 및 실행하지 않을 경우

(7) 식음료 서비스 제공자가 본 법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재료 구매제어 요구사항을 제정 및 실행하지 않을 경우

(8)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본 법규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생산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 하자가 있으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시정령을 내리고, 시정을 거절하는 자는 2천원 이상의 벌금을 행한다.

제127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시정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절하는 자는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경우가 엄중할 경우생산정지, 영업정지 시키고 나아가서 허가증 취소까지 한다.

(1) 식품생산자가 구매한 식품 원재료와 생산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2) 식품 생산경영 업체가 규정에 따라 전문직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교육하지 않을 경우

(3) 식품 생산경영 업체, 식품첨가제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입하검사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를 제정 및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식품생산 업체가 본 법규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 및 수행하지 않을 경우

(5) 식품 생산경영 업체가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6) 식품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업체가 본 법규 제50조 규정에 따라 판매정보, 관련 증표를 기록 및 보관하지 않을 경우

(7) 식음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법규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세척, 교정하지 않을 경우

(8)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질병을 앓고있는 인원을 선식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경우

(9) 본 법규 제66조,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식품 서류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 규정 요구에 따라 식품을 보관, 판매하지 않거나 재고식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입하시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지 않을 경우

(12) 생산하는 식품,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 질병예방, 치료기능이 언급되었을 경우

(13) 영유아 적합 식품의 생산기업이 생산 원료, 제품 배합방법, 라벨등을 식약품감독관리부문에 서류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4) 식기, 컵류 및 선식식품을 담는 용기에 대하여 사용전에 세척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세척소독이 부적격할 경우

(15)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16) 학교, 탁아소.유아원, 건축 공사장등 집중식사 업체가 본 법규 규정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8조 식품가공 소작업장, 식품 노점상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129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업체가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후에 처리,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분공하고 시정령을 내리며 경고를 준다. 관련 증거를 은닉, 위조, 인멸할 경우 생산정지, 영업정지 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원 증서발급 부서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0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본 법규 제12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를 수입하거나 규정에 따라 합격 증명자료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식품첨가제 새 품종, 식품 관련 제품의 새 품종을 최초로 수입하면서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3) 수출업자가 본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수출하지 않을 경우

(4) 수입상가 관련 주관부문이 본 법규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을 행위하라는 지시가 있는 후에도 리콜을 거절할 경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상가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 수입식품 경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제정 및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본 법규 제12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1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집중거래시장의 창설자, 매장 임대자, 전시회 개최자가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식품 경영자가 시장에 들어와 식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거나 검사, 보고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시를 내려 영업정지 시키고 나아가서 원 증서발급 부문이 허가증 또한 취소한다.

제132조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본 법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식품 경영자에 대해 실명등록, 허가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고, 인터넷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정지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5

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것은 령을 내려 영업정지 시키고 나아가서 원 증서발급 부문이 허가증 또한 취소한다.

제133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식품운송을 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각자 직책에 따라 분공하고 시정 지시를 내리며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절할 경우 지시를 내려 생산정지, 영업정지 시키고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원 증서발급 부문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4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등 부문 및 그의 직원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 리스크 감측 및 추출검사를 전개하는 것을 거절, 방해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등 부문은 각자 직책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지시를 내려 생산정지, 영업정지 시키고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속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준다.

제135조 식품생산경영 관련 허가증을 취소 당한 업체의 직접 책임 주관인원과 식품안전 관리인원은 처벌 결정이 내린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식품생산경영 관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 범죄로 인해 유기 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평생 식품생산경영 관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생산경영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을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맡게 할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6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생산경영자의 재산이 민사 배상책임과 벌금, 위약금 납부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할 경우 먼저 민사 배상책임을 진다.

제137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여 경영자, 소비자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경영자, 소비자의 교체, 반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감당한다.

제138조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경영자에게 손실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생산자에게 손실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배상청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선행책임제, 선행배상을 실행하고 회피해서는 안된다. 생산자 책임일 경우 경영자가 배상후 생산자에게 사후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 책임일 경우 생산자가 배상후 경영자에게 사후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 손실배상 청구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임을 알면서도 경영할 경우 소비자는 손실배상 청구를 하는 외에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물품값의 10배 또는 손실의 3배를 배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9조 수입한 식품이 중국 소비자에게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수입식품 경영자, 수입상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외 수출업자, 경외 식품생산업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경외 수출업자, 식품생산업체의 책임일 경우 경외 수출업자, 경외 식품생산업체는 중국 소비자, 수입식품 경영자, 수입상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40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의 생산판매죄, 유독 유해식품의 생산판매죄, 불법 경영죄 등에 해당될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 제2절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분의 책임

제141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아래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기과처분을 하거나 중과실 기록처분을 주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자는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준다.

(1) 식품안전 전과정 감독관리업무체제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재정에 따라 즉시 액수에 따라 식품안전업무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문의 식품안전감독관리 직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보완, 실행하지 않거나 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문의 식품안전업무에 대해 평가와 고과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3)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 대응책을 제정하지 않거나 중대 식품안전사고 발생후 식품안전사고 처리지휘기구를 즉시 설립하지 않고 응급 대응책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4)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간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제142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아래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접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중과실 기록처분을 주고 경우가 비교적 엄중할 경우 강등 또는 해직처분을 주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제명처분을 시행하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관련 주요 책임자는 인책사직을 해야 한다.

(1) 본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즉시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량영향 또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2) 본 행정구역 내의 부분이 관련된 구역성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즉시 정비하지 않아 불량영향 또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식품안전사고를 미루어 보고하거나 숨기거나 거짓 보고를 할 경우

(4) 본 행정구역 내에 특별중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 식품안전사고가 연속 발생할 경우

제1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등 부문이 아래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접책임의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제명처분을 주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관련 주요 책임자는 인책사직을 해야 한다.

(1) 중대 식품안전사고를 숨기거나 거짓보고를 할 경우

(2) 식품안전 위법행위와 식품안전사고를 조사 처분시 뇌물을 수수할 경우

(3) 식품안전 위법 범죄에 참여, 두둔하거나 방임할 경우

제144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 부문이 아래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접책임의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중과실 기록처분을 하고 경우가 비교적 엄중할 경우 강등 또는 해직처분을 주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제명처분을 주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관련 주요 책임자는 인책사직을 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를 조사 처리하지 않거나 식품안전사고 보고 접수후 즉시 처리하지 않아 사고의 확대 또는 만연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식품안전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비안전 식품에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 또는 불량 사회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3)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허가승인을 하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승인을 할 경우

(4) 본 법규 규정의 식품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제145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 부문이 아래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직접책임의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기과처분을 하거나 중과실 기록처분을 주며 경우가 비교적 엄중할 경우 강등 또는 해직처분을 하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제명처분을 한다.

(1)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 식품안전 집법인원에 대해 교육 고과를 진행하지 않거나 고과 불합격한 인원을 식품안전 집법업무에 배치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업체 식품안전관리인원 교육지침 및 추천고과방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3)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검사방안을 즉시 제정, 실행하지 않을 경우

- (4) 본 법규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즉시 진행하지 않을 경우
- (5) 식품안전 리스크 경고를 즉시 제출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공포하지 않을 경우
- (6) 식품안전 국가 및 지방표준에 따른 수행상황에 대해 추적평가를 즉시 진행하지 않고 식품안전표준의 수정을 조직하지 않을 경우
- (7)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획득후 규정에 따라 상급 주관부문과 본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상호 통보하지 않을 경우
- (8)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 (9)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식품안전 위법행위의 조사처분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 (1) 기타 본 법규 규정의 식품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146조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 부문이 식품안전감독관리 직책 이행 과정에 위법으로 검사, 강제등 집법조치를 취하여 식품생산경영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해야 하며 직접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147조 국가기관 직원이 식품안전감독관리 업무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등 행위가 직권남용죄, 직무소홀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3절 기타 기관 및 인원의 책임

제148조 식품안전 위험검사, 리스크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관, 기술인원이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측정, 평가보고서를 발급할 경우 법에 따라 기술기관의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기술인원에 대해 강등 또는 해직, 제명의 처분을 주며 직업종사 자격증이 있는 자는 그 자격증을 수여한 주관부문에서 직업종사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149조 식품검사기관, 식품검사인원이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검사보고서를 발급할 경우 그 자질을 수여한 주관부문 또는 기관이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자질을 취소하고 수취한 검사비용을 몰수하며 검사비용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검사비용이 1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하고 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식품 검사자에게 해직 또는 제명처분을 주며 중대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한 것은 그 직접책임의 주관인원과 식품 검사자에게 제명처분을 준다.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관 인원은 처분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식품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거짓 검사보고서를 발급함으로 인해 중대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관 인원은 평생 식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 식품검사기관이 식품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는 인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그의 자질을 수여한 주관부문 또는 기관에서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자질을 취소한다.

식품검사기관이 거짓 검사보고서를 발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제150조 인증기관이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인증 결론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인증인가감독관리부문은 수취한 인증비용을 몰수하고 인증비용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행하며 인증비용이 1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경우가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를 강행하고나아가서 인증기관의 승인문서 취소하며 관련 내용을 공포한다. 직접책임의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이 있는 인증인원에 대해서는 직업종사 자격증을 취소한다.

인증기관이 거짓 인증 결론서를 발급하여 소비자 또는 식품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51조 식품검사인원, 인증기관 직원이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검사인증 보고서를 발급하여 거짓 증명서 제공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52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 중에 식품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승인문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광고내용과 승인문서가 불일치한 보건식품 광고를 발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문, 식품검사기관, 식품업협회, 소비자협회가 광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할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직접책임의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중과실 기록처분을 하고 강등 또는 해직처분을 하며 경우가 엄중할 경우 제명처분을 한다.

식품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하고 경우가 엄중한데 대하여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해당 식품의 판매를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사회적으로 공포한다. 해당 식품을 여전히 판매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법 소득, 위법 판매의 식품을 몰수하며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한다.

제153조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 거짓 정보를 날조, 유포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식품안전 거짓 정보를 날조, 유포하거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식품안전 정보를 발표하여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감당한다. 매체에서 식품안전 거짓 정보를 날조, 유포하여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따라 영향제거, 명예회복, 손실배상, 사죄등 민사책임과 기타 관련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 제10장 부칙

제154조 본 법규 아래 용어의 의미:

식품이란 인간의 식용 또는 음용에 제공되는 완제품, 원료 및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약품이기도 한 물품을 가리킨다.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무독, 무해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양 요구에 부합되며 신체 건강에 그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초래하지 않음을 말한다.

예비포장식품이란 사전에 정량 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와 용기내에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첨가제란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부, 신선도 유지 및 가공공법의 수요로 인해 식품 중에 넣는 인공합성 또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와 용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포장, 담는데 사용되는 종이, 대나무목재, 금속, 범랑, 도자기, 비닐,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등 제품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직접 접촉하는 도료를 말한다.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되는 공구, 설비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생산, 유통, 사용 과정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를 직접 접촉하는 기계, 관도, 컨베이어 벨트, 용기, 도구, 식기 등을 말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세척제, 소독제란 식품, 식기, 컵류 및 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공구, 설비 또는 식품 포장재료와 용기의 직접적 세척 또는 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유통기한이란 예비포장식품이 라벨에 제시한 보관 조건하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식품기인성 질병이란 식품 중의 질병유발 요소가 인체에 진입하여 일으키는 감염성, 중독성등 질병을 말한다.

식품중독이란 유독유해 물질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식용하였거나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식용후 나타나는 급성, 아급성 질병을 말한다.

식품안전사고란 식품중독, 식품기인성 질병, 식품오염등 식품으로 인한 신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제155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법규 시행전에 취득한 관련 허가증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56조 유제품, 유전자변형 식품, 가축가금 도살, 주류 및 식염의 식품안전관리는 본 법규를 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57조 철도, 민항운영의식품안전 관리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분과 함께 본 법규에 따라 제정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 품질감독부문이 본 법규에 따라 제정한다.

국경항구 식품의 감독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본 법규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식량의 구입, 보관 및 정책성 식량의 품질안전은 식량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군용 식품과 자기공급 식품의 식품안전 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본 법규에 따라 제정한다.

제158조 국무원은 실제 수요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59조 본 법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